

고양창릉지구 사전청약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안내

- ▶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입주예약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이며, 금회 선정된 입주예약자는 추후 본청약 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▶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위하여 건설호수, 주택공급면적, 추정분양가격, 세대평면(팜플릿 참조) 등 기본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안내하는 것이므로 **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**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▶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**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자에 사전청약 홈페이지(<https://뉴홈.kr>)를 통해 인터넷 청약 신청접수**하여야 하고,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**구비서류를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 - ※ 청약 미신청 및 서류 미제출 시 당첨자 선정 불가
- ▶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적격심사 결과 주택소유·재당첨제한 등의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,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어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.
- ▶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(<https://뉴홈.kr>)의 **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(‘23.12.29. 공고 예정)**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▶ 금회 공급대상 선택형 공공임대주택은 6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며, 임대 및 분양전환 조건 등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▶ 신청자가 동 안내문 및 공고문을 미숙지하고 청약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,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‘공급자격’ 및 ‘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’를 충분히 안내·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고,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(별도 기간 연장 없음)

I 공급개요 및 일정

- ☐ 시 행 사 : 한국토지주택공사
 - ☐ 공급위치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, 동산동, 용두동, 향동동, 화전동, 도내동, 행신동, 화정동, 성사동 일원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내 A-1블록
 - ☐ 공급가격 : 미정
- (※ 사전청약시 추정분양가 및 추정임대조건 등을 안내하며, 실제 공급가격은 본청약 시 확정됨)

□ 사전청약 공급일정

공급유형	구 분	일 자(예정)	참 고
선택형 (6년 공공임대)	입주자모집공고	2023.12.29(금)	사전청약 홈페이지 (http://뉴홈.kr)
	특별공급 청약접수	2024.01.22(월) ~ 23(화)	

※ 위 일정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추후 사전청약 홈페이지(http://뉴홈.kr)에 게시되는 “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”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□ 금회 공급호수 : 선택형(6년 공공임대) 600호

지 구	블 록	유 형	주 택 형	사전청약 총 공급호수
고양창릉	A-1		블록 총계	600
		선택형 (6년 공공임대)	46	17
			55	67
			59	516

※ 사전청약 입주자모집은 주택형별 대표면적을 대상으로 접수가 이뤄지며, 향후 평면설계 등 사업승인과정에 따라 동일주택형 내에서도 면적 및 평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기관별 신청가능한 배정물량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시 선택한 블록 및 주택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이 불가합니다.

II 공급자격

□ 기본요건

- 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12.29. 예정) 현재 수도권(서울특별시, 경기도, 인천광역시)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제1항제27조의2의 도시 활력증진/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)으로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

- 입주자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저축) 구비여부

• **입주자저축 불필요**

국가유공자, 장애인, 철거민, 철거세입자,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, 건축물 소유자

• **입주자저축 필요 - 가입 6개월 경과, 월납입 6회 이상**

북한이탈주민, 일군위안부, 한부모가족, 장기복무 제대군인, 10년 이상 복무군인, 중소기업근로자, 우수기능인, 우수선수, 의사상자, 남북피해자, 다문화가족, 대한민국체육유공자

-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기준

아래 **[무주택세대구성원]** 전원(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)이 다음 **[주택 및 분양권등]**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**무주택자로 판단**

[무주택세대구성원]

가.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(이하 '**주택공급신청자**'라 함)

나. 주택공급신청자의 **배우자**

다. **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**

라. **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**

마.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**배우자의 직계비속**

[주택 및 분양권등]

가. **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**

나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**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**

다. 나목에 따른 지위(이하 "분양권등"이라 한다)를 **승계취득**(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하여 **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**

□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

-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12.29. 예정)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분
-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12.29. 예정)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분
-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기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
-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었으나 신청자격 부적격 등으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으로서 사전청약 당첨제한 기간(과거 당첨일로부터 6개월) 내에 있는 분
- 과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(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,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, 토지임대부 분양주택,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)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또는 동규칙 개정('10.2.23) 이전에 "3자녀 우선공급" 및 "노부모부양 우선공급" 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
-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(과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)에 있는 분 등

※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,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어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.

III 유의사항

-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에 사전청약 홈페이지(<http://뉴홈.kr>)를 통해 별도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. (미신청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불가)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,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동일한 공급유형·입주자모집공고에 다른 특별공급(다자녀가구, 신혼부부, 생애최초, 노부모부양)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신청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중복·교차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. (단,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사전청약간 중복신청은 가능하며, 중복 당첨 시 발표일 기준 先 당첨만 인정됨)
-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 시 동·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·층별·향별·층 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. (본청약시 잔여 동호 발생 시에도 동·호 변경불가)
- 전매제한 및 거주 의무 기간은 본청약 시점에서 분양가격 및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등을 감안한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.
-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본청약 당첨자발표일로부터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4조에 따른 기간 동안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.
- 본 안내문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대략적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,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, 공급일정, 유의사항 등은 ‘23.12월 공개 예정인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사전청약 관련문의	
▶ 사전청약 홈페이지	http://뉴홈.kr
▶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	1670-4007
▶ 고양창릉 사전청약 상담	02-381-4007
※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추정분양가격 문의 불가	
※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 및 선정 관련은 LH가 아닌 각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	



※ 본 위치도는 공급 대상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한 용도이며, 사업추진 과정 등에서 도면의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